

## 제 10 장

### 국경 간 서비스무역

#### 제 10.1 조

##### 적용범위

1. 이 장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국경 간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그러한 조치는 다음에 영향을 주는 조치를 포함한다.

- 가. 서비스의 생산, 유통, 마케팅, 판매 및 배달
- 나. 서비스의 구매 또는 이용, 또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 지불
- 다. 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유통, 운송 또는 통신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
- 라. 다른 쪽 당사국 서비스 공급자의 자국 영역 내 주재, 그리고
- 마.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서 채권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재정적 담보의 제공

2. 이 장의 목적상,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란 다음을 말한다.

- 가. 중앙, 지역 또는 지방 정부나 당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그리고
- 나. 중앙, 지역 또는 지방 정부나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여 비정부기관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3.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가. 제12.20조(정의)에 정의된 바와 같은 금융서비스. 다만, 금융서비스가 제12.20조(정의)에서 정의된 바와 같은 당사국 영역 내 금융기관에 대한 적용대상투자가 아닌 적용대상투자에 의해 공급되는 경우에는 제4항이 적용된다.

나. 정기 또는 비정기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및 국제 항공운송서비스를 포함하는 항공서비스<sup>1)</sup> 및 항공서비스를 지원하는 관련 서비스. 다만, 다음은 제외한다.

- 1) 항공기가 운항하고 있지 아니하는 기간 중 그 항공기의 보수 및 유지 서비스
  - 2) 항공운송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그리고
  - 3) 컴퓨터 예약 시스템(CRS) 서비스
- 다. 제16.20조(정의)에 정의된 바와 같은 조달, 또는  
라. 정부지원 용자,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제공하는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sup>2)</sup>

4. 제10.4조, 제10.7조, 제10.8조 및 각주 2는 적용대상투자에 의한 어느 한 쪽 당사국 영역 내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그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sup>3)</sup>

5. 이 장은 자국의 고용시장에 접근하려고 하거나 자국의 영역에서 영구적으로 고용된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에 대해 당사국에게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지 않으며, 그 접근 또는 고용에 대해 그 국민에게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지 않는다.

6. 이 장은 당사국의 영역에서 정부권한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부권한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란 상업적 기초에서 공급되지 않고, 하나 이상의 서비스 공급자와의 경쟁을 통해 공급되지도 않는 서비스를 말한다.

- 
- 1) 더 명확히 하기 위해, “항공서비스”라는 용어는 운수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 2) 제10.1조제3항라호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 당사국의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로 인해 불리한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하는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러한 사안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에는 호의적이고려가 부여된다. 이 각주에서 언급된 “협의”라는 용어는 제23.4조(협의)에 따른 “협의”를 의미하지 않는다.
  - 3)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적용대상투자에 의한 당사국 영역 내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자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대한 제10.4조, 제10.7조, 제10.8조 및 각주 2의 적용범위는, 적용되는 모든 비합치 조치와 예외를 조건으로, 이 장의 제10.1조에 규정된 적용범위로 한정된다. 양 당사국은 제10.1조의 제4항을 포함하여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제9장(투자) 제2절(투자자와 투자유치국 간 분쟁해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양해한다.

## 제 10.2 조 내국민대우

각 당사국은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

## 제 10.3 조 최혜국대우

각 당사국은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

## 제 10.4 조 시장접근

어느 당사국도 지역적 소구분에 근거하거나 자국의 전 영역에 근거하여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가. 다음에 대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

- 1) 수량쿼터, 독점,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인지와 관계없이, 서비스 공급자의 수
- 2)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 형태의, 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
- 3) 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 형태의, 지정된 숫자단위로 표시된 서비스 영업의 총수 또는 서비스의 총산출량<sup>4)</sup>, 또는

---

4) 이 조의 가호3목은 서비스 공급을 위한 투입요소를 제한하는 당사국의 조치를 적용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 4)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 형태의, 특정 서비스 분야에 고용될 수 있거나 서비스 공급자가 고용할 수 있으며, 특정 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하고 직접 관련되는, 자연인의 총수, 또는
- 나.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법적 실체 또는 합작투자를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것

## 제 10.5 조 현지주재

어느 당사국도, 국경 간 서비스공급의 조건으로서,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 영역에 대표사무소 또는 어떠한 형태의 기업을 설립 또는 유지하거나, 거주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 제 10.6 조 비합치 조치

1. 제10.2조부터 제10.5조까지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가. 당사국이 다음에서 유지하는 기존의 모든 비합치 조치
    - 1) 그 당사국이 부속서 I에 기재된 자국 유보목록에 기재한 바와 같이, 중앙정부, 또는
    - 2) 지방정부
  - 나.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개선, 또는
  - 다.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개정이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 또는 제10.5조에 대하여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그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그 개정
2. 제10.2조부터 제10.5조까지는 부속서 II에 기재된 자국 유보목록에 기

재된 바와 같은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대해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제 10.7 조 규정5)의 개발 및 적용에서의 투명성

제21장(투명성)에 더하여,

가. 각 당사국은 이 장의 대상과 관련된 자국의 규정에 대해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질의에 응답하기 위한 적절한 체제를 유지하거나 설립한다.<sup>6)</sup>

나. 가능한 범위에서, 각 당사국은

- 1) 자국이 이 장의 대상과 관련하여 채택을 제안하는 모든 조치를 사전에 공표한다. 그리고
- 2)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러한 제안된 조치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당사국이 이 장의 대상과 관련하여 채택을 제안하는 규정에 대해 사전공고와 의견제시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그렇게 하지 않은 사유를 서면으로 제공한다. 그리고

다. 가능한 범위에서, 각 당사국은 이 장의 적용대상과 관련된 최종 규정의 공표와 그 발효일 간에 합리적인 시간을 둔다.

## 제 10.8 조 국내 규제

1. 당사국이 서비스 공급을 위해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자국 법과 규정에 따라 완성된 것으로 간주되는 신청의 제출

5) 더 명확히 하기 위해, “규정”이란 중앙, 지역 및 지방 정부에서 면허의 승인 또는 기준을 제정하거나 이에 적용되는 규정을 포함한다.

6) 소규모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적절한 체제를 수립할 의무의 이행은 자원 및 예산제약을 고려할 수 있다.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을 통지한다.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과도한 지체 없이 신청의 처리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의무는 부속서 II에 기재된 자국 유보 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은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승인 요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자격 요건 및 절차, 기술표준, 그리고 면허요건과 관련된 조치가 서비스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을 구성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각 당사국은 개별 분야에 적절한 경우 다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 가. 그러한 조치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자격 및 능력과 같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기초할 것
- 나. 그러한 조치가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 이상의 부담을 지우지 않을 것, 그리고
- 다. 면허절차의 경우, 그러한 조치 자체가 서비스 공급에 대한 제한이 아닐 것

3. GATS 제6조제4항과 관련된 협상의 결과(또는 양 당사국이 참여하는 그 밖의 다자 협의체에서 수행된 유사한 협상의 결과)가 발효되는 경우, 그 결과를 이 협정상에서 발효되도록 하기 위해 양 당사국간 협의 후에 이 조는 적절하게 수정된다.<sup>7)</sup>

## 제 10.9 조

### 인정

1. 서비스 공급자의 승인, 면허 또는 증명을 위한 표준 또는 기준의 전부나 일부를 충족할 목적으로, 그리고 제4항의 요건을 조건으로, 당사국은 특정 국가에서 습득된 교육 또는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허 또는 증명을 인정할 수 있다. 조화를 통하여 또는 달리 달성될 수 있는 그러한

7)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이 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해 그 밖의 모든 협의체에서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입장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인정은 관련 국가와의 협정 또는 약정에 기초하거나 자율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2. 당사국이 비당사국 영역에서 습득된 교육 또는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허 또는 증명을 자율적으로 또는 협정이나 약정에 의해 인정하는 경우, 제10.3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서 습득된 교육이나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허 또는 증명을 인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기존의 것인지 또는 미래의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1항에 언급된 유형의 협정 또는 약정의 당사국인 어느 한 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관심이 있는 경우에, 그 다른 쪽 당사국에게 자국과 그러한 협정 또는 약정의 가입을 교섭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협정 또는 약정을 교섭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한다. 당사국이 자율적으로 인정을 부여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습득된 교육, 경험, 면허 또는 증명이나 충족된 요건이 인정되어어야 할 것임을 다른 쪽 당사국이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한다.

4. 어느 당사국도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승인, 면허 또는 증명을 위한 자국의 표준이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국가간 차별 수단을 구성하거나 서비스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인정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5. 부속서 10가는 그 부속서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전문직 서비스 공급자 의 면허 또는 증명에 관해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 제 10.10 조

##### 이행

양 당사국은 이 장의 이행을 검토하고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그밖의 상호 관심 사안을 고려하기 위해, 양 당사국이 이용가능한 모든 기술적 수단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통해, 매년 또는 달리 합의하는 바에 따라 협의한다.

### 제 10.11 조 혜택의 부인

사전 통지 및 협의<sup>8)</sup>를 조건으로,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비당사국의 인 또는 혜택을 부인하는 당사국의 인에 의해 소유되거나 지배되고 있는 기업이면서 그 기업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 제 10.12 조 지불 및 송금<sup>9)</sup>

- 각 당사국은 국경 간 서비스공급에 관한 모든 송금과 지불이 자국 영역 내외로 자유롭고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 각 당사국은 국경 간 서비스공급에 관련된 그러한 송금과 지불이 송금 시점에 일반적인 시장 환율에 따라 자유사용가능통화로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다음에 관한 자국법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고 선의에 입각한 적용을 통해 송금 또는 지불을 금지하거나

8) 이 조에 언급된 “협의”라는 용어는 제23.4조(협의)에 따른 “협의”를 의미하지 않는다.

9)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부속서 9다(임시 세이프가드조치)는 이 조에 적용된다.

나 연기할 수 있다.

- 가. 파산, 지급불능, 또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
- 나. 유가증권, 선물, 옵션 또는 파생상품의 발행, 거래 또는 취급
- 다. 법 집행 또는 금융규제당국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 송금에 대한 재무보고 또는 기록보존
- 라. 형사범죄, 또는
- 마. 사법 또는 행정 절차에서의 명령 또는 판결의 준수 보장

### 제 10.13 조

####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국경 간 서비스무역 또는 국경 간 서비스공급이란 다음을 말한다.

- 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로의 서비스공급
  - 나.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 대한 서비스공급, 또는
  - 다.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당사국의 국민에 의한 서비스공급
- 그러나 이는 적용대상투자에 의한 당사국 영역에서의 서비스공급은 포함하지 않는다.

기업이란 제1.4조(정의)에 정의된 “기업”과 그 지점을 말한다.

전문직 서비스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전문적인 고등교육이나 동등한 수준의 훈련 또는 경력 또는 시험이 요구되고,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당사국에 의해 부여되거나 제한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러나 이는 숙련기능인 또는 선박 및 항공기 승무원에 의해 공급되는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란 어떤 서비스를 공급하려고 하거나 공급하는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sup>10)</sup>

---

10) 제10.2조, 제10.3조 및 제10.4조의 목적상, “서비스 공급자”는 각각 GATS 제17조, 제2조 및 제16조에서 사용된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 부속서 10가 전문직 서비스

### 전문직 서비스 개발

-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관련 기관이 다른 쪽 당사국의 전문직 서비스 공급자의 면허 및 증명에 관한 상호 수용가능한 표준 및 기준을 개발하고, 상호인정에 관한 권고를 공동위원회에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 제1항에 언급된 표준 및 기준은 다음의 사항과 관련하여 개발될 수 있다.
  - 교육: 학교 또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정
  - 시험: 구술시험 및 면접과 같은 대안적 평가방법을 포함한, 면허 취득을 위한 자격시험
  - 경력: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요구되는 경력의 기간과 내용
  - 행동 및 윤리: 직업행동표준과 그러한 표준과의 비합치에 대한 정 계조치의 내용
  - 전문성 개발 및 자격증의 갱신: 전문자격증을 유지하기 위한 계속 적 교육 및 지속적 요건
  - 업무 범위: 허용되는 활동의 범위 또는 한계, 또는
  - 현지 지식: 해당 지역의 법, 규정, 언어, 지리 또는 기후와 같은 사항에 대한 지식 요건
- 제1항에 언급된 권고를 수령하는 때에, 공동위원회는 그 권고가 이 협정에 합치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권고를 검토한다. 이러한 공동위원회의 검토 결과에 근거하여, 각 당사국은 상호 합의한 기한 내에 적절한 경우에는 이러한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자국의 관련 기관을 장려한다.

임시면허

4. 상호 합의한 개인 전문직 서비스의 경우,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관련 기관이 다른 쪽 당사국의 전문직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임시면허의 발급을 위한 절차를 개발하도록 권장한다.

#### 검토

5. 공동위원회는 이 부속서의 이행을 매 3년마다 최소 1회 검토한다. 공동위원회는 검토 시 각 당사국의 규정에 관한 양 당사국의 다른 시각을 고려할 것이다.